

행복한 변화, 사람 사는 동작



동작구



수신 관내 81개 방문요양기관장 귀하

(경유)

제목 **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관련 업무 협조요청**

1. 구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기관에 감사드립니다.
2.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신설한 「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」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방문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종사자들이 한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신청대상 :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

나. 신청기간 : '21. 1. 25.(월) 09:00 ~ 2. 5.(금) 18:00

다. 신청방법 : 근로복지서비스(welfare.kcomwel.or.kr) 홈페이지 온라인신청

라. 지원내용 :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원

※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, 저소득자 우선 지급

마. 문 의 처 :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, 또는 전담 콜센터(☎1644-0083)

바. 협조사함 : 저소득자 등 해당 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

- 붙임
1.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설명자료 1부.
 2.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관련 시식 1부.
 3.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화면 안내 1부.
 4. 관련 보도자료 1부. 끝.

동작구청장

주무관 박윤진 어르신복지팀장 代 망기욱 어르신장애인과장 01/26 이선희

협조자

시행 어르신장애인과-3167 () 접수 ()

우 / www.dongjak.go.kr

전화 02-820-9673 /전송 / / 대시민공개

「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」 사업설명 자료

① 사업 개요

- 「필수노동자 보호·지원 대책」(’20.12.14.)의 일환으로, 저소득 방문 돌봄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한시적 지원 실시(1명당 50만원씩 9만명)
 - 저소득자를 우선하여, 예산범위 내에서 9만명 지원

② 지원대상 및 요건

- (지원대상) 방문(재가)돌봄서비스*(7종) 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강사
 - * 재가요양서비스, 노인맞춤돌봄, 장애인활동지원, 장애아돌봄, 가사간병서비스, 산모 신생아서비스, 아이돌봄서비스
 - ** 고용보험 가입 여부,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
- (지원요건)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- (재직요건) 사업 공고일(’21.1.15.)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면서, ’20년에 월 60시간*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
 - *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종사 정보를 기준으로 일괄 검증
 - (방문요양)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(건강보험공단DB)
 - (가사간병서비스·산모신생아서비스·장애인활동지원사) 바우처 제공시간(사회보장정보원DB)
 - (노인맞춤돌봄·아이돌봄)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(보건복지부·여성가족부DB)
 - (장애아돌봄) 시도별 17개 수탁기관에 등록된 시간(보건복지부DB)
 - ** 단, 위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을 경우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“근무 확인서” 제출 시 추가로 인정 가능
 - ***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“계약체결 확인서”로 재직요건 대체
 - (소득요건) ’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 1천만원 이하
 - * 국세청DB(소득금액증명 내 소득 합산)로 일괄 검증(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)
 - ★주의★ 단, ’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’20년 소득을 기입하고,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(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)
- (우선순위 선발)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, 예산 범위 내에서 9만명을 지원

③ 신청 및 지급

□ (신청기간) '21.1.25.(월) 09:00 ~ 2.5.(금) 18:00

□ (신청방법) “근로복지서비스(welfare.kcomwel.or.kr)” 홈페이지를 통해
100% 온라인 신청(PC전용, 모바일에서는 불가)

* 지원금 신청 페이지 : <http://welfare.kcomwel.or.kr/CareWorker.jsp>

○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5부제 시행

< 출생연도별 신청가능 일자 >

구 분	1.25.(월)	1.26.(화)	1.27.(수)	1.28.(목)	1.29.(금)	1.30.(토)~2.5.(금)
출생연도 끝 자 리	1, 6	2, 7	3, 8	4, 9	5, 10	제한 없음

□ (지급)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,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
1인당 50만원 지급

○ 심사 완료 후,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 예정

* 다만,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

④ 중복수급 관련

□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불가
(중복신청 시,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)

□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나,
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
(미지급분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→구직촉진수당 총액은 유지)

⑤ 문의사항 등

□ 지원요건,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, 또는
전담 콜센터(1644-0083)를 통해 확인 가능

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
(스마트폰 등)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시, 신청방법
안내 및 PC를 사용한 신청 지원 가능

* 단,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, 가급적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 권장

서 식 2

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

초·중·고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

- 방과후강사에 한하여 제출 -

1. 신청자 인적사항

① 성 명		② 주민등록번호	-
③ 주 소			
④ 휴대전화		⑤ 기타 연락처	(전화번호, 이메일 등 일괄)
⑥ 현재소속	지역 00(서울) 기관명 000초 담당자 전화번호 _____ ☞ 강사가 2교 이상 순회할 경우 1교만 택하여 작성		

2. 2020년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확인

☞ 2020학년도 방과후 학교에 대한 계약체결분에 한하여 작성

☞ 강사가 2교 이상 순회할 경우 1교만 택하여 작성

■ 학교명 : 예) 서울 000초

■ 프로그램명 : 예) 로봇만들기

■ 계약기간 : 예) 2020. 3. 1. ~ 2021. 2. 28.

■ 프로그램 운영 예정시간* : 예) 주당 2시간 총 40시간 (2주당×20주)

* 코로나19로 미운영 하였더라도, 계약서 또는 학교측과 사전협의하여 운영하고자 한 예정시간 기재

위와 같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합니다.

2021. . .

학교명

주 소

확인자

성명

직위

연락처

학 교 장

(직인)

서 식 3**이의신청서**

신 청 인	성 명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
주 소			
내 용	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부지급 건에 대한 이의신청		
안내받은 날짜 [SMS 수신일]	2021년 _____ 월 _____ 일		
이의신청 취지	☐ ❶ 재직요건 미충족에 대한 이의신청 ☐ ❷ 소득요건 미충족에 대한 이의신청 ☐ ❸ 중복수혜요건 미충족에 대한 이의신청 ☐ ❹ 기 타 ()		
이의신청 사유	<세부적인 사유 상세 기재, 여백 부족 시 별지 활용가능>		
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 2021년 월 일 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			
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			
이의신청기간 안내	지원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		
구비서류	1.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. 2.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		

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화면 안내

<신청화면 설명 : ① 2019.12.31. 이전 근무자> *일부 문구 수정 가능함

네이버: 근로복지넷 → 생활인정자금용자 → 방문돌봄종사자한시지원금 바로가기 (http://welfare.kcomwel.or.kr) →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(1.25.활성화) 사업안내/ ★신청화면(클릭) 고객 상담 주민등록번호 이전 단계 인증서 발급 휴대폰 인증 휴대폰 인증 ※ 신청인 입력사항 ①성명: (※)은 필수사항입니다. ②주소: 주민등록번호: 신 청 인 ③휴대전화: ④가나다순영제: ⑤주민등록지: 선택 개시번호: ⑥현재주소: 기판영 전화번호 ⑦근무시작일: ☐ 2019년 이전 ☐ 2020년 이후 ※ 지원 자격요건 확인 ① 귀하께서 방문돌봄종사자(7개 직종) 또는 호·농·고·방과후학교 강사로, 2020년도 총 60시간 이상 근무하신 달이 6개월 이상 이어지도록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소득요건확인: 1. 귀하의 2019년 연간소득이 1,000만원 이하입니까? ☐ 예 ☐ 아니오 2. 1,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국세청에 소득 신고내용이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3. 근무하신 직종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동쪽 체크 가능) ② 방문돌봄 ③ 근무직종확인: ☐ 가사간병서비스 ☐ 노인맞춤돌봄 ☐ 상요양보호서비스 ☐ 아이돌보미 ☐ 모발보호사 ☐ 장애인돌봄 ☐ 장애인돌봄지원사 ④ 학교고 방과후학교 강사 ☐ 방과후학교 강사 4. 2021년 1월 15일 기준, 현재 해당 직종에 근무중이며, 20.1.1.~20.12.31. 사이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이었습니까? ☐ 예 ☐ 아니오 5. 파견업체 찾아보기... 6. 신청일 현재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받으셨거나 지급받을 예정이십니까? ☐ 예 ☐ 아니오 7. 국민취업지원제도(제1구직촉진수당) 한시지원금과 같은 달 지급 불가하며, 같은 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내 분할지급합니다.(구직촉진수당 정책 공지) ※ 본인 확인 신청인용 위와 같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을 신청합니다. ※ 위변조로 신청 시 관리는 물론 과태료처분 등 과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1년 1월 20일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	<접근경로> http://welfare.kcomwel.or.kr/CareWorker.jsp <본인인증> ○ 본인인증은 ① 휴대전화인증, ② 공인인증서 인증 택일 <신청인 인적사항> ○ (※) 필수입력,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(핸드폰 인증 경우) ○ 근무시작일 택일(19년, 20년) → 2019년 이전 → 2020년 이후 <1. 소득요건> ○ '아니오' 선택시 경고메시지 팝업→최종 저장안됨 <2. 근무직종확인> ○ 방문돌봄, 학교강사 중복가능 ○ 방문돌봄(7직종) 중복가능 <3. 근무기간 확인> ○ '아니오' 선택시 경고메시지 팝업→최종 저장안됨 ○ (파견업체) - 학교강사: 필수 첨부 - 방문돌봄: 공적DB 누락된 경우에만 첨부 <중복지원 여부 확인> ○ 신청일 현재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신청 불가 ○ '예' 선택시 경고메시지 팝업→최종 저장안됨 <개인정보 제공 동 동의> ○ '미동의' 선택시 경고메시지 팝업→최종 저장안됨 <부정수급 확인 및 신청> ○ 동의(예) 클릭 후 '신청' 클릭 → 접수메시지 발송
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 1. 수집·이용 2. 제공 3. 교육·보통정보처리 4. 서명 ☐ 동의 ☐ 미동의 ☐ 동의 ☐ 미동의 ☐ 동의 ☐ 미동의 2. 부정수급관련 약약서 (모두 동의합니다. ☐ 예 ☐ 아니오) 동의 신청 X 닫기	<개인정보 제공 동 동의> ○ '미동의' 선택시 경고메시지 팝업→최종 저장안됨 <부정수급 확인 및 신청> ○ 동의(예) 클릭 후 '신청' 클릭 → 접수메시지 발송

☞ 보도일시: 2021. 1. 25.(월) 조간,
 <인터넷 2021. 1. 24.(일) 12:00 이후>
 ☞ 총 4쪽(붙임 자료 포함)

◆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
 부장 심희선(052-704-7301)
 차장 김종욱(052-704-7302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, <http://www.kcomwel.or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1월 25일부터 온라인신청

—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—

☐ 근로복지공단(이사장 강순희)은 1. 25.(월)부터 2. 5.(금)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「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」의 온라인신청을 받는다.

○ 동 사업은 금융산업 노·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,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

☐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(welfare.kcomwel.or.kr/CareWorker.jsp, PC만 가능)에서 온라인신청할 수 있으며, 안정적인 온라인신청을 위해 1.25.(월)부터 1.29.(금)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.

* 24시간 신청 가능, 신청문의는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(1644-0083)

○ 1.25.(월) ~ 1.29.(금)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, 1.30.(토) ~ 2.5.(금)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.

구 분	1.25.(월)	1.26.(화)	1.27.(수)	1.28.(목)	1.29.(금)	1.30.(토)~2.5.(금)
출생연도 끝 자 리	1, 6	2, 7	3, 8	4, 9	5, 10	제한 없음

*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신청으로 설계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현장방문은 자제하고,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 권장

① 지원대상

☐ 지원대상은 방문(재가)돌봄서비스*(7종)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,

* 재가요양서비스, 노인맞춤돌봄, 장애인활동지원, 장애아돌봄, 가사간병서비스, 산모신생아 서비스, 아이돌보미

○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.

② 지원요건

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○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('21.1.15.)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,
'20년에 월 60시간*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.

*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. 단,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("제공기관 확인서" 양식 제출 필요)

- 한편,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"계약사실 확인서"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.

○ 소득요건 '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.

* 국세청 신고 '19년 연소득 기준(소득금액증명 확인). 단, '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'20년 소득을 기입하고,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

☐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,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,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

* 다만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, '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는 해당하는 경우 제출

* 방과후강사의 경우 학교장의 계약사실확인서 반드시 제출

☐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'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,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.

③ 중복수급 관련

- ☐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,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,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.
- ☐ 한편,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,
 -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.

④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

- ☐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,
 -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,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,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.
 - * 다만,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
- ☐ 「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, 전담 콜센터(1644-0083)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(welfare.kcomwel.or.kr/CareWorker.jsp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- ☐ 강순희 이사장은 “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”라면서,
 - “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”라고 강조했다.

 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심희선 부장(☎052-704-7301), 김종욱 차장(☎052-704-730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

붙임**「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」 주요 Q/A****Q1. 신청-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**

- ☐ (사전준비) 본인이 지원요건(재직·소득)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편리합니다.
- ☐ (신청) 1.25.(월)부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,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관련 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기재사항을 기입합니다.
 - 별도의 증빙자료는 해당되는 경우*에만 첨부합니다.
 - * ①관계기관 DB 미등록 종사시간 증빙자료, ②20년 신규종사자 소득 증빙자료, ③방과후 강사 계약체결 확인서식 등
- ☐ (심사) 요건 심사를 완료한 후, 2월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Q2. 재직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
- ☐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- ① 사업 공고일('21.1.15.) 현재 종사 여부는 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 중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.
 - ②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“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, 주휴,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됩니다.
- ☐ 여러 제공기관과 계약한 경우, 기관별 종사시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,
 -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(DB)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는 경우,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Q3. 소득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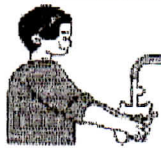
- ☐ 소득요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'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, 국세청 홈텍스 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- 방문돌봄업무 외에도 기타 소득을 포함한 '19년 개인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, “소득금액증명원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 - * '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시 '20년 소득을 기입하고,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

참고

코로나19 예방수칙

질병관리본부
KCDCTHE NEW KOREAN TV
해외감염병
NOW1339
질병관리본부 콜센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
기억해야 할 행동수칙

국민 예방수칙

물과 비누로 꼼꼼히
자주 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
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기침할 땐 옷소매로
입과 코를 가리기발열, 기침 등
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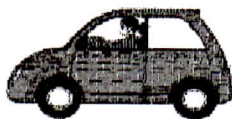
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

특히 노인·임산부·만성질환자 등은
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

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



마스크 착용하기

외출 자제, 1~2일 경과 관찰하며
집에서 휴식하기대형병원, 응급실 방문 자제
관할 보건소, 1339, 지역번호+120으로
먼저 상담하기의료기관(선별진료소) 방문 시
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*선별진료소 주소: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,
지역보건소 또는 1339, 지역번호+120 문의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,
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의료인과 방역당국의
권고 잘 따르기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: www.mohw.go.kr (해외 감염병 예방)

발행일: 2020. 2. 21

Line 2339, 우리 정부 2339
해외감염병
NOW1339
질병관리본부 콜센터